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

[시행 2024. 2. 29.] [대통령령 제34267호, 2024. 2. 29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재산세제과) 044-215-4311

## 제34조의5(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 ① 삭제 <2020. 2. 11.>

- ② 삭제<2020. 2. 11.>
- ③ 삭제<2020, 2, 11.>
-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"특정법인의 이익"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  - 가.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·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 ·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  - 나. 가목 외의 경우: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
- 2.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  - 가. 특정법인의「법인세법」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(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인세액의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
  - 나.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)
-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<개정 2020. 2. 11.>
- 1. 삭제 < 2020. 2. 11.>
- 2. 삭제 < 2020. 2. 11.>
-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 2. 11.>
- 1.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)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
-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"현저히 낮은 대가" 및 "현저히 높은 대가"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(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<개정 2020. 2. 11.>
-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에 따른다.<개정 2019. 2. 12.>
-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 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, 법인세 상당액은 제 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신설 2020. 2. 11., 2022. 2. 15.>

[본조신설 2016. 2. 5.]

[제34조의4에서 이동 <2020. 2. 11.>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